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이태훈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23년 4월 13일

3. 제정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 이를 근거로 그동안 동 조직운영 및 사업내용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대상 내용과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조직운영 및 사업내용을 지원해 왔음.
-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대상 내용과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경남, 전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임.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2조	정의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책무	제8조	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제4조	보조금 지원	제9조	포상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안 제2조(정의)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충청북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 및 읍·면·동위원회로 구체화함

○ 안 제3조(책무)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이념과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

- 충청북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사업 시행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중복지원 금지)

- 다른 보조금 지원과의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는 것임.

○ 안 제8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사용하게 하며,
-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하도록 함.

다. 종합 검토의견

- 현재 충청북도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를 비롯하여 총 11,89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지방재정법」 제17조¹⁾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제7조²⁾를 근거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충청북도협의회’ 등 국민운동 관련 단체·조직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다만, 동 조례안을 통해 기존의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로 보임.
- 특히, 제4조(보조금의 지원)에서 지원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정함으로써 도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원 또는 재정부담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됨.
- 동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 재정지원 가능 사업, 지원신청 및 사후 정산절차 등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가 상위법령에 의거 이미 시행하고 있던 지원 사업들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끝.